

석면조사기관(제2013-120007호)

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

2018. 08.



한국환경시험연구원
Korea Environment Testing and Research Institute



측정 지점 위치(도식도)



- #1~4 : 부지경계선
- #5 : 위생설비입구
- #6 : 폐기물 반출구
- #7 : 작업장주변

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서

2018 04/06 10:04 FAX 0432881399

sanjae

0001

석면해체·제거 작업 신고 증명서

신고 작업	신고 번호	업 장 명 (공사명, 작업명)	다산 자연해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석면폐 기물 필거용역	
	청 주-20180103			
	소재지	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영동항간로 1711 진용어네탁향		
	전화번호	---	작업기간	18/04/06-18/09/15
신 고 인	석면해체· 제거업체명	다우건설주식회사	고용노동부 등록번호	4738
	소재지	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시장1길 20-1 (영동읍)		
	대표자성명	최승열	전화번호	043-744-6497
<p>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증명서를 내드립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18년 4월 6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장</p>				

석면조사기관 지정서

제2013-120007호

석면조사기관 지정서(최초)

기관명	주식회사한국환경시험연구원	
소재지	(139-837)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32길 27 (상계동, 2층)	
대표자성명	이용식	
지정사항	총 대행(지정) 한 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	관 할 지 역 대행(지정) 한 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	대행(지정) 지역	전국

※ 준수사항

1. 석면조사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고용노동지방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2. 석면조사기관은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38조의2 규정의 의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2013. 8. 30

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

